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질의에 건교부 회신

최근들어 냉난방시스템의 변화로 인하여 오피스텔, 원룸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시스템에어컨 등의 시공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장비제조 또는 판매업체가 시공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교부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시공할 경우 처벌조항”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 “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시스템에어컨이란 건축물에 냉방 및 난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시스템으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가스(LNG, LPG)를 사용하는 GHP(Gas Engine Heat Pump)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EHP(Electric Heat Pump) 방식으로 구분된다.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1의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여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질의한 내용과 건교부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Q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 외부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하는 시스템에어컨(GHP, EHP)의 설치금액(자재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 시공할 경우 처벌조항 및 그내용

A 특정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며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

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교통부

수신자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건설업역)

귀 협회 설비협정책지원 2005-386호('05.12.8.)의 관련입니다.

[질의요지]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외부에 설치하고, 여러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하는 시스템에어컨(GHP, EHP)의 설치금액(자재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설치 시공할 경우의 처벌조항 및 그 내용

[회신내용]

1. 특정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됩니다.

3. 따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냉난방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설교통부장



ACCESS FLOOR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질의에 건교부 회신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회장 전태근)가 최근 'ACCESS FLOOR 설치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한 자가 시공하는 것의 적법 여부'를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건교부가 'ACCESS FLOOR가 전산실, 향온향습실, 크린룸 등을 축조하기 위한 냉난방배관, 공기조화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부수되는 공종이라면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바닥에 이중으로 설치되는 ACCESS FLOOR는 전산실, 향온향습실, 크린룸 등에 전기나 통신선의 배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에 의한 난방과 냉방을 위한 공기덕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냉·난방 배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기계설비공사업무에 해당됩니다.

ACCESS FLOOR에 대한 질의 및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자 주]

Q ACCESS FLOOR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 중 실내의 공기조화와 냉난방을 위한 기기설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적법한지 여부

A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설비, 열절연공사, 방음, 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 개량, 플랜트 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

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한다.

질의의 ACCESS FLOOR가 실내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실내건축공사이나 전산실, 향온향습실, 크린룸 등을 축조하기 위한 냉난방배관, 공기조화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부수되는 공종이라면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신청번호: 1AA-0604-001314

접수번호: 2AA-0604-001262

민원제목: ACCESS FLOOR 설치자격 관련 질의

1. 건설 산업 발전에 전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물의 바닥에 이중으로 설치되는 ACCESS FLOOR는 전산실, 향온향습실, 크린룸등에 전기나 통신 선의 배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실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에 의한 난방과 냉방을 위한 공기덕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냉·난방배관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ACCESS FLOOR 설치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실내의 공기조화와 냉·난방을 위한 기기설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처리부서: 건설경제팀(차상걸) 연락처: 02-2110-8510
접수일: 2006.04.03 19:05:21 처리일: 2006.04.04 16:50:09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1.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설비, 열절연공사, 방음, 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 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 공사 등 건축물, 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리, 설치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에 해당함.

2. 질의의 ACCESS FLOOR가 실내장식물 목적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실내건축공사나, 전산실, 향온향습실, 크린룸 등을 축조하기 위한 냉난방배관, 공기조화 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해 부수되는 공종이라면 기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지어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임.